

계약에 의한 군사학과 운영 규정(3-5-31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 학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계약학과의 운영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계약학과의 명칭) 육군훈련소·육군부사관학교·육군항공학교·제32보병사단·제203특공여단 및 계룡대·자운대 지역 군부대(이하 ‘협약 군 기관’ 이라 한다)와 운영계약에 따라 군사경찰대학에 재교육형 계약학과인 군사학과를 둔다.(개정 2015.2.4., 2017.3.14.)

제3조(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) 군사학과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은 군사학 학사 학위과정과 편입과정으로 하고 전문성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내용을 정한다.(개정 2015.2.4., 2017.3.14.)

제4조(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) ① 본교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서 협약 군 기관에서 입학 희망자로 통보된 인원내 대해 입학 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.(개정 2015.2.4., 2017.3.14.)

② 그 밖에 학생선발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5조(학생 정원) 학생정원은 별표1과 같다. 단, 매 학년도 정원은 협약 군 기관과 합의 하여 정한다. (개정 2014.5.8., 2015.2.4., 2017.3.14.)

제6조(운영 경비 및 부담) ① 군사학과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매 학년도의 운영경비는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② 협약 군 기관은 운영경비의 100분의 50이상 지원 한다. (개정 2015.2.4., 2017.3.14.)

제7조(학기 및 수업일수) 학기 및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칙 제8조 및 제9조에

따른다.(개정 2017.3.14.)

제8조(설치운영기간 및 학생의 보호) ① 계약학과 설치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고, 2년 단위로 건양대학교와 협약 군 기관이 상호합의 하에 계약 기간을 연장한다. 단, 계약 기간 내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시 상호 합의하에 계약만료기간을 별도로 정한다.(개정 2015.2.4., 2017.3.14.)

② 재학 중 타지역 전출 시 건양대학교에서 잔여 학업기간 동안 학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기존과 동일 혜택을 적용한다.

③ 재학 중 전역, 제적, 퇴역 등 군인으로서의 신분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 한다. 다만,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전역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에게는 기존과 동일 혜택을 적용한다.

④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, 건양대학교에서 잔여 학업기간 동안 학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에게는 기존과 동일 혜택을 적용한다.

제9조(계약학과 운영위원회)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둔다.(개정 2017.3.14.)

제10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, 학칙시행세칙, 학사내규 및 계약학과 운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1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은 2014학년도 군사학과 계약학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1) 계약에 의한 군사학과 정원

설치유형	학과명칭	입학유형	정원	수여학위
재교육형	군사학과 계약학과	신입학	10	군사학사
		편입학	20	